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3. 09. 06.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 2023. 08. 29.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 액	비율(%)
세 입	560,287,171	477,305,457	82,981,714	17.38
세 출	138,360,985	73,678,310	64,682,675	87.79

3. 세입현황(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 액	비율(%)
계	560,287,171	477,305,457	82,981,714	17.38
기 획 예 산 과	259,052,060	233,456,272	25,595,788	10.96
재 무 과	164,896,926	88,718,771	76,178,155	85.86
세 무 1 과	133,565,508	152,403,472	△18,837,964	△12.36
세 무 2 과	2,568,424	2,568,424	-	-
부동산정보과	204,253	158,518	45,735	28.85

□ 세입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829억8,171만원(17.38%) 증액된 5,602억 8,7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 추가경정예산으로
- **기획예산과** 세입 추가예산은 255억9,578만원(10.96%) 증액된 2,590억5,20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¹⁾** 255억 9,038만원과 시비보조금 540만원(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임.
- **재무과** 세입 추가예산은 761억7,815만원(85.86%) 증액된 1,648억9,69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구금고 협력사업비) 9억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²⁾** 751억8,815만원임.

1) **일반조정교부금**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1.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2.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 + 보조금 집행잔액)

○ 세무1과 세입 추가예산은 188억3,796만원(△12.36%) 감액된 1,335억6,5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188억4,495억원(1,145억3,291만원→956억8,7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미사용잔액 699만원임.

○ 세무2과 세입 추가예산은 없으며,

○ 부동산정보과 세입 추가예산은 4,573만원(28.85%) 증액된 2억42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2,58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 550만원과 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관리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세계잉여금 :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두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4. 세출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 액	비율(%)
계	138,360,985	73,678,310	64,682,675	87.79
기 획 예 산 과	136,015,676	71,378,560	64,637,116	90.56
재 무 과	604,613	604,613	-	-
세 무 1 과	754,076	746,693	7,383	0.99
세 무 2 과	578,507	578,507	-	-
부동산정보과	408,113	369,937	38,176	10.32

☐ 세출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46억8,267만원(87.79%) 증액된 1,383억6,0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예산은 646억3,711만원(90.56%) 증액된 1,360억1,56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직원 인건비 및 경비) 2억3,871만원 감액(154억3,352만원→151억9,480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³⁾) 1,365만원,

3)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재정 관련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

○ 사업근거 :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 사업내용

-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사무관리비(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600만원,
- 예비비⁴⁾로 8억7,100만원(95억2,705만원→103억9,805만원),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⁵⁾ 전출금으로 239억8,517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⁶⁾ 예탁금으로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 위탁사업명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업내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기능개선 등
 - 사업비 : 78,705천원 :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5.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7조(설치 및 운용)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

○ 재무과 세출 추가 예산은 없으며,

○ 세무1과 세출 추가예산은 738만원(0.99%) 증액된 7억5,407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 주택가격조사결정 국고보조금반환금 738만원임.

○ 세무2과 세출 추가예산은 없으며,

○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예산은 3,817만원(10.32%) 증액된 4억81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지적정보화 및 민원실 관리(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550만원,

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2.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580만원,
-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비(도로명판 신설 또는 유지관리) 1,000만원,
- 공정한 부동산거래 관리 일반운영비로 7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479만원임.

5. 검토결과

-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⁷⁾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7)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